

특허번호 : 110-12-052 (CFS : 110-86-051)

[특허갱신]

특허보세구역 특허장

운 영 인	① 법 인 명 (성 명)	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		
	② 사업자등록번호	129-81-71673		
	③ 주 소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04		
특 허 내 역	④ 보세구역 명 칭	(한글)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 컨테이너 보세창고	종 류	영업용보세창고
		(영문)KD E&S CONTAINER BONDED WAREHOUSE		
	⑤ 대 표 자	김 경 배	생 년 월 일	1969.05.27
	⑥ 소 재 지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04 (매암동)		
	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	CY 28,677.10㎡, 위험물옥외저장소 598.43㎡, CFS창고 6개동 12,105.04㎡ 합계 : 41,380.57㎡		
	⑧ 설비 수용 능력	CY : 5,788TEU, 위험물옥외저장소 60TEU, CFS : 33,894 CBM [30,504M/T]		
	⑨ 장차전사건설물품종류	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의한 적출입 수출입화물		
	⑩ 작업의 원재료			
	⑪ 설치·운영의 목적	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의한 적출입 수출입화물 보관		
	⑫ 특 허 기 간	2018.06.28 ~ 2024.06.27.	⑬최초특허일자	2003.06.30
⑭특 허 조 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세법상 세관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준수 하십시오. 2.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특허를 취소합니다. 3.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사실상 보세구역을 운영할 경우 본 특허를 취소합니다. 4. 특허갱신시 특허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

「관세법」 제1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.

2018년 6월 14일



울 산 세 관 장

